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지정

[이주의 초점]

PE·PP 등 중간재, 최종 제품도 관리 대상...
6월 30일까지 시행 (4p)

[전문가칼럼]

2026년 「관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바뀌었나
주요 개정사항 및 변화 (14p)

[위클리 뉴스]

미 상호관세 환급 신청 4월 20일부터 가능
‘중동발 충격’ 3월 수입물가 28년 2개월만 최대폭
상승 및 수출입 운송비 중동 중심으로 급등
한·UAE CEPA 발효 앞두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8p)

[판례 동향]

폴딩팬·실링팬, ‘테이블용·천장용팬’vs.‘기타의 팬’
품목분류 관련 조세심판결정례 (22p)

[품목분류 동향]

압축천연가스(CNG) 운송 컨테이너의 주요 품목분류
쟁점과 WCO 결정사항 (32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4월 20일(통권 제217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지정

08 Weekly News

전문가칼럼

- 14** 정진용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2026년 관세 관련 법 개정사항으로 알아보는
주요 변화

관세행정실무해설

- 19** 질의응답사례
APTA 양허관세 적용

판례동향

- 22** 조세심판결정례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 32** 품목분류해설
압축천연가스(CNG) 운송 컨테이너의 품목분류
- 40** 세번 바로잡기
'제38류vs.제39류' 수소염화불화탄소 혼합물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지정

PE·PP 등 중간재 및 최종 제품까지 관리 대상… 4월 15일~6월 30일 시행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넘어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원료부터 최종 제품, 제도 규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나프타에 이어 기초유분과 석유화학 제품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공급망 통제를 한층 높인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3월 27일 시행된 나프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장한 것으로,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의료용품, 생활필수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산업 구조상 나프타 및 중동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 지역 리스크가 겹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기초유분부터 최종재까지… 공급망 관리 확대

이번 규정의 핵심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7개 기초유분을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다. 정부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뿐 아니라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신속히 품목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원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중간재와 최종재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공급망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보고서 ‘이란전쟁 여파에 따른 석유화학 전방산업 영향’에 따르면, 석유화학 기초유분과 유도품을 직접 구매하는 2·3차 협력사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 한계에 도달, 도산 위험에 몰리고 있다. 부타디엔 기반의 합성고무 SBR과 BR 공급망이 마비되며, 플라스틱 내외장재와 타이어부터 완성차까지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 석유화학 기초유분별 활용 분야와 공급망 차질 영향 ●

석유화학 기초유분	전방산업 활용 분야	공급망 차질 영향
에틸렌	플라스틱(PE, PP), 비닐(PVC) 등	가동률 하락 시 공급 마비 및 가격 폭등
프로필렌	자동차 내장재, 가전 외장재	정유사 가동률 연동에 따른 공급 부족
부타디엔	합성고무, 타이어	원료 확보 경쟁 심화 및 마진 축소
벤젠·톨루엔·자일렌	유기화학 제품 원료, 합성원료	원료 공급 단절에 따른 생산 중단 리스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관세청, 7개 기초유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는 우선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으로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도 이번 조치와 연계해 15일 기초유분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했다.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의 비축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 화학물질등록 특례 도입으로 공급망 병목 해소

정부는 공급망 대응과 함께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한시적 규제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전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출이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돼 신속히 원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납사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는 원료 물질 공급 부족·가격 상승을 겪고 있지만, 직접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학물질등록을 이행해야 해 신속히 물량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부장관이 기후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기업은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고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를 수일 내로 단축할 수 있어 대체 공급망 확보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내용	(현재) 기업이 화학물질등록 서류 준비에 3개월 이상 소요 → (특례적용 시) 수일 내 준비 가능
개선 시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신속히 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활용해 조기 시행(4월 2주)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 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특례를 2027년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급망 리스크 대응 ‘상시화’… 경제안보 정책으로 전환

전문가들은 한국이 원유 도입의 약 70%,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의 절반가량, LNG의 약 2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붕괴는 유관 산업의 가동 중단으로 직결되기에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극도로 낮은 에너지 자급률, 특정 지역 및 경로에 의존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및 전력망 고립 등으로 미 상공회의소의 국제에너지 안보리스크 지수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정유·화학뿐 아니라 자동차·반도체·건설 등 주요 전방산업의 생산비 상승과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 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석유화학 산업을 제조업 전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산업안보의 핵심 보루로 간주하고 정부와 기업이 범국가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공급망 위기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1670-7082)’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해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과정 전반을 살피고 해당 원료가 수입되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통관절차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이번 규정에 관해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가격 안정 대책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상황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조정 및 제도 개선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 10단위 기준 23개) ●

명칭	MTI 코드(6자리)	HS 10단위 품목명	HS Code
1 에틸렌(Ethylene)	211090	에틸렌	제2711.14-1000호
	211010	에틸렌	제2901.21-0000호
2 프로필렌(Propylene)	211020	프로펜(프로필렌)	제2901.22-0000호
	211090	프로필렌	제2711.14-2000호
	211030	1,3-부타디엔	제2901.24-1000호
3 부타디엔(Butadiene) 등 4탄소(C4) 기초유분	21109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제2901.23-0000호
		이소프렌	제2901.24-2000호
		부타디엔	제2711.14-4000호
		부틸렌	제2711.14-3000호
		부탄	제2901.10-1000호
4 벤젠(Benzene) 등 6탄소(C6) 기초유분	211040	벤젠	제2902.20-0000호
		벤조올(벤젠)	제2707.10-0000호
	211090	헥센	제2901.29-1000호
		헥산	제2901.10-2000호
5 톨루엔(Toluene) 등 7탄소(C7) 기초유분	211050	톨루엔	제2902.30-0000호
	211090	톨루올(톨루엔)	제2707.20-0000호
		헵탄	제2901.10-3000호
6 자일렌(Xylenes) 등 8탄소(C8) 기초유분	211060	혼합크실렌이성체	제2902.44-0000호
		크실롤(크실렌)	제2707.30-0000호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제2707.50-0000호
	211090	옥텐	제2901.29-2000호
7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211090	기타	제2901.29-9000호
		기타	제2901.10-9000호

적용기한은 4월 15일~6월 30일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은 공고한 날의 다음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한다(출처: 관세청)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CBP, 관세 환급 착수... 20일부터 신규 시스템서 신청 가능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환급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4월 20일(현지시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급 신청 및 1단계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4월 20일 도입하고 단계적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가 4월 15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환급 절차는 사실상 중단되고, CAPE 시스템을 통한 일괄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복수의 수입신고를 건별로 처리할 필요 없이 통합해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환급 신청은 수입통관신고서상 수입신고자(IOR, Importer of Record)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 환급 대상이지만, 1단계 시스템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한다. 3월 31일 CBP 브랜드 로드 무역정책·프로그램 국장은 1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 중 약 63%를 차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경우나 PSC·Protest 제출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은 관련 기능이 추가로 개발된 후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에는 납부한 관세 원금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 고시 이자율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 회피 등 신고 내용 검증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절차 비교 ●

일반적 관세 환급		구분	IEEPA 관세 환급(CAPE)
정산 전 또는 정산 후 180일 이내		환급 대상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 (정산 여부 무관)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		환급 방식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 (CAPE)에서만 가능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			
수입신고별 처리		신청 방식	수입자별 여러 건의 신고(수입)를 일괄 신청 가능

기업들은 환급을 신청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수다. CBP 전자통관 시스템인 ACE 계정과 전자환급(ACH) 등록이 필요하며, 미국 내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 환급 절차 ●

환급 신청	시스템 검증	심사 및 (재)정산	환급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 제출 (복수의 수입신고번호 일괄신청 가능)	제출된 신청 건 시스템 자동검증 (신청자격, 수입신고번호 등)	환급 대상 수입신고 건 IEEPA 관세 제외해 정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 송금 (환급신청일로부터 60~90일 소요)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자동환급이 아닌,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환급은 통관(entry) 건별이 아닌, IOR 단위로 일괄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기존 관세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세 과소납부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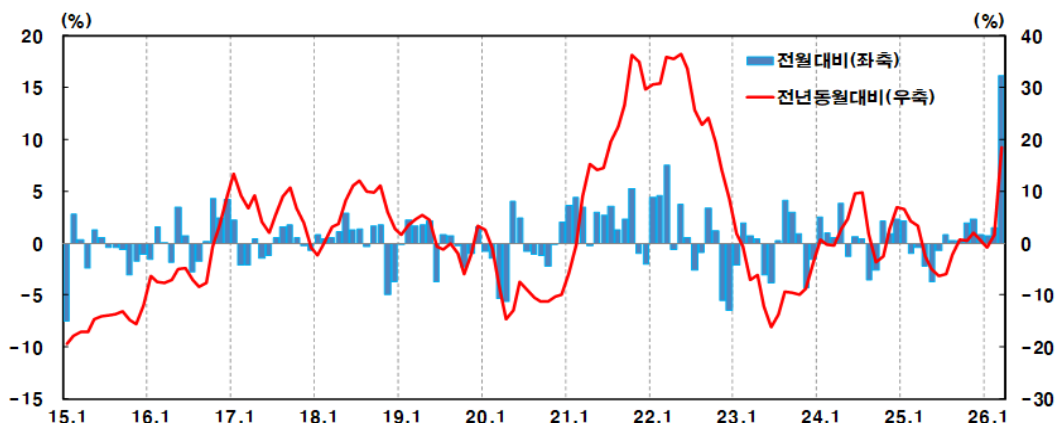
한편, 이번 환급 조치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펜타닐 관세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는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비합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 김성은 기자 |

‘중동발 충격’ 3월 수입물가 28년 2개월만 최대폭 올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올해 3월 우리나라 수출입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물가 역시 에너지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했다.

● 2026년 3월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



한국은행이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16.1% 상승하며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8.4% 상승했다.

이번 수입물가 급등은 국제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급등했으며, 이에 따라 원유를 포함한 광산품 중심의 원재료 가격이 전월 대비 40.2%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와 중간재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석탄·석유제품과 화학제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8.8% 올랐으며, 그중 석탄 및 석유제품이 37.4%, 화학제품이 10.7% 상승하며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5%, 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출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함께 월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2.6%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3월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3%, 전년 동월 대비 28.7%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88.7%)과 함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2.7%)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림수산물 등은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물가지수는 계약 시점 기준이지만, 교역조건 산정에는 통관 시점 기준의 수입물가지수가 사용된다”며, “원유나 석유제품은 계약 후 국내 통관까지 1개월가량 시차가 있어 3월 국제유가 급등이 통관 기준 수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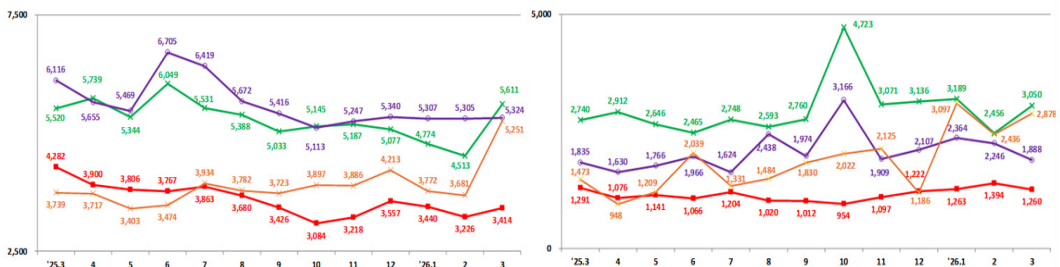
| 김성은 기자 |

3월 수출입 운송비 상승... 중동 해상 수출 운송비 42.7% 급등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이 해상·항공 부문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중동 해상 수출 운송비가 전월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4월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중동 등 원거리 항로의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 항로는 하락세를 보였다.

● 원거리 항로(미국 동·서부, EU, 중동) 해상 운송비 수출(좌)&수입(우) ●

(1,000원/2TEU)



초록색 미국 서부, 보라색 미국 동부, 빨간색 EU, 노란색 중동(출처: 관세청)

미국 서부행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전달 대비 24.3% 상승한 561만 1,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행 운송비는 525만 1,000원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40% 이상 폭등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면 인접 국가인 중국(50만 1,000원)과 일본(75만 9,000원)은 각각 전월 대비 약 9~10% 하락하며 물류비 부담이 완화됐다.

해상 수입은 미국 서부(24.2%), 일본(6.5%), 중국(6.6%), 베트남(12.6%) 항로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중동 노선은 287만 8,000원으로 전월 대비 18.1% 올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5.3%나 폭등한 수치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보험료 및 할증료 인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항공 수입의 경우 전체 항로에서 상승했다. 특히 미국 노선의 운임은 kg당 6,365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50.4% 급등했다.

| 서준식 기자 |

한·UAE CEPA 발효 앞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접수

관세청이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기존에 포괄적 인증 효력이 있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UAE CEPA를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특정 협력과 품목에 한해 인증을 받기에 이번 협정과 관련해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사전인증을 통해 이들 기업의 제도 활용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가능하며, 신청 관련한 문의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수입 국화도 유통이력 관리...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정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입 증가로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HS 제0603.14-0000호)'가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5월 1일 이후 수입 통관되는 국화부터는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가 의무화된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거래 후 5일 이내 거래처 정보와 물량 등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 제6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제5항에 따라 신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수입농산물을 음식점이나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개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당 유형별로 5일치 물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업자’를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한 자’로, ‘소매업자’를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개정해 차량 판매상과 노점상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서준식 기자 |

무역위, 중국산 아연 냉연제품에 반덤핑관세 건의 “최대 33.67%”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4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사건’에 대해 예비 긍정 관정을 내리고,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아연 및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으로, 지붕·외장·구조재 등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해당 품목은 기본 관세율 8%가 적용되며,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 분석 등을 거쳐 9월경 최종 관정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함께 열렸으며, 무역위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 김성은 기자 |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 제품 ●

공급국	품목	HS Code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제7210.41-0000호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22.34%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26.28%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Winstone Development Ltd	33.67%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그 밖의 공급자	25.75%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제7226.99-3000호		

출처: 무역위원회

관세청, 중동 리스크 점검··· 관세 2,407억원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관세청은 4월 13일 ‘관세·물류 비상 대응 전담조직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종합지원 방안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121건에 대해 입항 전 통관을 완료해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중동 지역 상황으로 지연된 수출신고 4,943건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 5,070건을 지원했다. 긴급 물품과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및 간소화 절차를 적용해 최우선 처리하고 있다.

세정 지원으로는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4곳에 대해 총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는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 가격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석유·요소수·나프타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리와 국내 자원 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심사도 강화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운송비가 상승한 경우를 고려해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을 마련한다. 실제 운임이 아닌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해당 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돼 4월 3일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서준식 기자 |

3개월도 안 남았다··· EU,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쿼터 반토막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자 무관세 수입 철강 제품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무관세 수입 쿼터는 1,830만톤으로 제한된다. 2024년 세이프가드 조치 대비 47% 축소될 예정으로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50%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시 조강(melt and pour)한 국가를 증명하는 제조소 증명서(mill certificate) 등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증빙 기준은 추후 EU 집행위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2018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며 WTO 협정상 최대 8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5월 중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식 채택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유럽철강협회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촉발한 무역 조치의 도미노 효과”라 부르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과잉 생산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EU가 미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 김성은 기자 |

2026년 관세 관련 법 개정사항으로 알아보는 주요 변화



정진용 |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재정경제부가 2025년 12월 23일 공포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08호)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됐다. 이와 함께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도 연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관세 탈루 방지, 납세자 권익 증진,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희귀질환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수출입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관세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중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개정사항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1. 구매대행업자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먼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 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과세가격 정보의 허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됐다.** 이는 구매대행업자를 단순 중개자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관리 책임 주체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요건 변경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 제공	-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 수령 - <삭제>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자발적·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신제품이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후적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해 신청한 경우 등 총 6가지의 명확한 반려사유를 규정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신설 ●

연번	반려 사유
1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5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견본을 사전에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관세조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관세법〕제114조 제1항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과 조사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연장됐다. 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 개시 15일 전에 조사 대상 및 사유 등을 사전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20일 전으로 확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변경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조사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	별도 규정 없음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

이번 개정으로 일반 관세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재조사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탁송품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제도 개선〔관세법〕제235조의2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 신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 탁송품 및 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의 간소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된 「관세법」 제235조의2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이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 제공, 통관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액·다빈도 물품의 통관 환경을 반영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를 신설해 절차적 통제 장치도 보완했다. 세관장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상표권자와 수출입신고인 또는 우편물 화주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일정 기간 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세관이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법률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시행령에서는 권리자 참여 및 통지 절차를 통해 권리보호를 보완하는 구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통관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권리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최근 「관세법」 제254조의2 개정을 통해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가 운송 실무에 맞게 합리화됐다.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상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물품을 배송하거나 제3자를 통해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를 운송업자가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 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배송 수행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제특송업체가 국내 택배사 등에 배송을 재위탁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반복적인 정보 취합과 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제출 의무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있으므로, 재위탁 계약 시 관련 의무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실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책임 구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향후 운송업자의 관리·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5. 평가 및 시사점

이번 「관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은 전반적으로 관세 탈루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통관 실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탈루 방지 측면에서는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해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가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유인 구조를 병행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탁송품 관련 제도는 해외 직구 확대 등 변화된 통관 환경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상표권 보호 절차는 간소화하면서도 권리자 통지 및 소명 절차를 유지해 권리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역시 재위탁 구조를 고려해 합리화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통관 효율성과 관리·통제 기능 간 균형을 도모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은 책임성 강화, 절차적 투명성 제고, 그리고 산업 및 실무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 등 실무자는 단순 신고·대행 기능을 넘어, 사전심사 활용, 기한 관리, 계약상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대행, 품목분류, 탁송품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는 2026년 시행되는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실무 적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APTA 양허관세

중국산 말차 분말(HS 제0902.20-0000호)을 수입할 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APTA 2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목적)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목적)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개발도상국 간特惠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는바,

별표 3의 나(녹차와 누에고치 일반양허관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장접근물량 7.8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통관 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추천서 및 AP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해 20%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천서는 받았으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WTO 양허관세 40%의 세율이 부과되며, 시장접근물량 7.8톤을 초과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51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

품목번호	품명	시장접근물량	세율(%)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 10 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7.8톤*	20.0
0902 20 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
5001 00 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143톤	1.0

* 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의 물량을 합한 물량임

환급 / 분할증명서 발급 조건

**원자재 수입 후 국내 업체에 판매할 때 분할증명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과세세금계산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라 ‘수입분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1.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2.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양도일자 확인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분증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2.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고시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및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에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 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환급 가능 여부 등 환급 서류의 심사 및 결정은 관할지 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환급 관련 자료를 구비해 소재지 관할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 선스프레이의 HS Code

선스프레이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의 ‘기능성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9000 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304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탈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쿨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 (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으로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 요지

쟁점물품의 사용방식 및 수입자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번호 : 조심2024관0089(2025.2.11.)

청구법인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1.부터 2022.7.13.까지 중국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M호 등 21건으로 Folding Fan(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Ceiling Fan(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4.51-9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8414.51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14.59-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414.59호’라 한다)의 ‘기타의 팬’에 해당한다면서 보정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14.59호로 정정하고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7.28. 및 2022.1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10.26., 2023.8.31. 및 2024.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각각 제8414.59호로 회신 및 재회신(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2.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〇〇〇원, 부가가치세 〇〇〇원 및 가산세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5.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므로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용도는 테이블용 및 천장용이다.

제8414.51호의 용어는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인데 이 소호의 용어 중 ‘용(用)’은 사용되는 장소를 지칭하는 바, 이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은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①물품은 원형 좌대(座臺) 위에 선풍기 날개를 받치는 접이식 폴딩(Folding)이 있고, 좌대 뒤에는 합성수지제 벽걸이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테이블 등 바닥에 놓고 사용하거나 필요시 고리를 이용하여 벽 선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쟁점②물품은 천장에 걸 수 있도록 본체 뒷면에 거치홀이 있고 보호망이 없으며, 그 용도는 목욕탕이나 기타 협소한 공간에서 환기용으로 천장 등에 걸어서 사용한다.

쟁점물품의 용도를 더 확장하면 텐트나 나무 등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쟁점물품의 사용 장소가 임의로 부가된 것일 뿐 테이블용 또는 천장용 팬에 적합한 고유의 구조(설계·제작)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이 특정된 장소 외에 부가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8414.51호에서 제외하여 제8414.59호로 분류하는 것은 「HS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에 위반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HS 해설서 제8414호의 ‘실내용 팬(room fans)’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제8414.51호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팬을 분류하는 특제 호이므로 그 소호에 열거된 용도(또는 장소)로 사용되는 물품만 해당 소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HS 해설서 제8414호에는 실내 전용 또는 장소 전용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

로 제8414.51호에는 소호의 용어인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에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팬을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률적 해석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내용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제8414.51호로 분류할 수 없어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부분 실내·외 겸용인 소형 선풍기는 모두 제8414.51호가 아니라는 의견으로서 기존에 소형 선풍기들을 제8414.51호로 분류하였던 품목분류 사례와 배치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8414.5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선풍기를 마당이나 원두막 등 야외에서 사용하면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으로서 품목분류 기준을 흐트리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캠핑용 텐트·유모차 등에 결합하여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진 ‘기타의 팬’으로서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고리나 이동식 거치홀은 고정식보다 편리하게 사용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범용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쟁점①물품은 그 무게가 500~610g 정도여서 휴대용 선풍기(이른바 손선풍기)처럼 휴대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이동성은 쟁점물품의 소형화·접이 기능·배터리 내장·리모콘 등 물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고리 또는 거치홀을 부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리 또는 거치홀의 부착은 기존의 기능에 벽걸이 및 보관 기능이 부가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고리 또는 거치홀을 장치하기 위하여 폴딩 장치가 설계되었다는 의견이나, 고리는 운반 및 보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액세서리이고, 폴딩은 쟁점물품을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때 사용 각도의 조정이나 보관 시 편의를 위한 장치이며, 시중에는 고리가 없는 폴딩 팬도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가 가능하도록 가볍게 제작되었다거나 사용시간이 4~18시간 이내로 지속성이 약한 점 등을 근거로 제8414.59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제8414.51호는 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할 뿐 중량의 제한이 없고, IT 제품은 소형화·경량화되고 있으며, 사용시간은 배터리의 사용시간인 점, 쟁점①물품을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형 좌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취보아도 쟁점물품은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과거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중 제8414.51호로 분류된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을 비교해 보면, 원형 좌대와 접이식 기둥 등 기본적인 설계·제작 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오로지 쟁점물품에 합성수지제 벽걸이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테이블 등에 올려놓거나 벽 등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제8414.5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으면서도, 2024.3.22. 쟁점①물품과 거의 유사한 물품(이하 ‘쟁점유사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414.51호로 회신(품목분류4과-1687호)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을 제8414.59호로 분류한 사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3관22, 2023.10.18.)는 쟁점물품과 다르거나 일부 사례가 누락되는 등 이 견과 관련이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적용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 제2호 나목 2)에서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수출입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서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10.26.자 쟁점사전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세법령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기타의 팬’이므로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소호의 용어에 따라 제8414.51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쟁점물품이 테이블용 및 천장용 등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8414.51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제8414.51호에 분류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팬’으로 보아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무선으로서 이동이 편리하고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리 또는 거치홀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야외용 텐트의 행거형 서큐레이터·텐트 타프팬·난로의 열기 순환 등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테이블과 천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이동성은 임의로 부가된 기능이므로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과 달리 휴대가 가능하도록 가볍게 제작된 점, 사용 시간이 4~8시간 이내로서 고정하여 송풍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기에 지속성이 약한 점, 주된 용도를 테이블용 등으로 특정할 수 없고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특히 캠핑 또는 야외활동 시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 또는 거치홀을 부착하여 설계 및 제작된 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고유한 특성은 이동식 소형 선풍기에 있다.

특히, 쟁점물품에만 부착되어 있는 하단 고리 또는 상단 거치홀을 활용하여 야외, 실내·외의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유 특성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쟁점물품은 폴딩이 되도록 설계되어 이동성 및 다양한 활용성을 강조하였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액세서리로 캠핑용 비너를 함께 넣어 판매하며,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쟁점물품 설계의 주된 목적은 이동식 선풍기로 제작된 것이고, 테이블 및 천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의로 부가된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8414.59호로 분류하여 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일관되게 ① 팬의 주기능이 명백하게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에 있는 경우에는 제8414.51호로, ② 그 외 ‘기타의 팬’은 제8414.59호로 분류하였다.

즉,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테이블용 또는 천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팬과 같이 사용 용도가 명백하게 테이블용 및 천장용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8414.51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

과 같이 거치대 또는 고리 등을 사용하여 실·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팬은 제8414.59호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핸들 또는 고리 등을 이용하여 탁상용 외에도 텐트 등 야외활동 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는 제8414.51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관되게 제8414.59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414.59호로 판단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들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벽걸이용 선풍기를 제8414.51호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사물품은 본체 후면에 홀이 형성되어 있어 반드시 벽에 고정된 못 등에 걸어 활용해야 하는 물품으로서 가용성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내용 팬’으로 인정한 것으로, 고리가 부착된 쟁점물품과는 차이가 있다.

벽걸이용 선풍기는 벽에 직접 구멍을 뚫어 못이나 나사를 박아 선풍기를 고정하는 방식이나, 고리 방식은 벽에 손상 없이 선풍기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지지력이 제한되지만 장소(벽·기둥·텐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가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물품과 폴딩 및 헤드 상단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만 다를 뿐 하부에 원기둥·판형 거치부를 갖추어 상하 각도 조절이 가능한 탁상용 선풍기(Q800)를 제8414.59호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관22, 2023.10.13.).

(다) 쟁점처분이 「통칙」 제6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통칙」 제6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최우선 원칙인 「통칙」 제1호에 따라야 하고, 「통칙」 제6호는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보완적 규정에 해당한다.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8414.51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제작 의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HS 해설서 제8414호에서 ‘실내용 팬(room fans)’에 대하여 각도 조절이나 방향 전환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고, 이들은 천장용 팬·탁상용 팬·벽걸이용 팬 및 벽이나 창유리(window panes) 등에 설치하기 위한 원형의 테두리가 있는 팬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제8414.51호의 용어는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인데, 이는 HS 해설서상 ‘실내용 팬(room fans)’ 중 “등(etc)”의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의 특정 장소(용도)

를 열거한 것인바, 이는 범용성 없이 ‘테이블용 팬’ 또는 ‘벽용 팬’처럼 열거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팬을 분류하는 소호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즉, 소호의 용어를 좇아 제8414.51호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팬을 분류하는 특계호로서 열거된 용도(장소)로만 사용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호의 용어에서 나열한 물품 외에는 이 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열거주의), 그 외의 물품은 ‘기타의 팬’으로 보아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일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과 달리 본체 하단에 고리 또는 본체 상단에 거치홀을 부착하여 제작되었고, 캠핑카·유모차·야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실내용 팬’이 아니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탁상 또는 천장에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실내·외에서 이동하며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쟁점물품의 주기능을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14.51호의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8414.59호의 ‘기타의 팬’으로 분류함이 적법·타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제8414.51호의 용어 중 ‘용(用)’은 장소를 지칭하고, 이 장소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설계·제작된 물품을 해당 호로 분류하는바, 이 호에서의 범용은 장소의 다양성을 의미하게 되고, 소호의 용어에서 열거한 테이블·바닥·벽·천장·지붕 이외의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범용성 팬으로서 잔여호인 제8414.59호로 분류하는 것이 「통칙」 제6호에 따른 타당한 분류다.

(2)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유사물품 등을 제8414.51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2022.10.26.자 쟁점사전화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소급하여 제8414.59호로 판단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제8414.51호 품목분류 사례들은 벽 등에 고정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팬으로서 그 사용 용도(장소)가 명백하고, 그 전용으로 설계 및 제작된 팬으로서 고리를 사용하여 부탁하는 쟁점물품과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용도도 쟁점물품과는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과거 제8414.51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을 제8414.51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을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을 ‘테이블용·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②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모터가 내장된 USB 충전식의 무선 선풍기로서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폴딩 또는 스탠드를 90도로 접어 본체 하단에 있는 고리에 비너를 연결하여 벽 등 다양한 곳에 걸어서 사용이 가능한 Folding Fan(쟁점①물품)과 상단의 거치홀에 비너를 연결하여 천장·벽·텐트 등에 걸어두고 사용이 가능한 Ceiling Fan(쟁점②물품)이다.

<표> 쟁점물품의 구조 등 : <생략>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폴드를 접은 후 파우치에 넣어 휴대 또는 이동성이 편리하다는 점과 식탁·침실·화장대·골프장·캠핑장·유모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초경량 280g, 캠핑·낚시·차박 등 야외활동에 적합한 사이즈의 타프팬, 본체의 3개 거치홀을 통해 천장용 실링팬 및 벽걸이 선풍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7.28. 및 2022.1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팬이고, 쟁점물품이 테이블·벽·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타의 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414.59호로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유사물품 분류사례 등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소형 선풍기를 제8414.51호로 분류한 사례들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도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위 사례들은 테이블이나 바닥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벽 또는 천장 등에 못과 같은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선풍기에 대한 것으로서, 고리 또는 거치홀을 사용하여

특정한 면(面)이 아닌 다양한 장소(벽·기둥·나무·천장·텐트·유모차 등)에 고정시킬 수 있는 쟁점물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고리 등이 부착되어 다양한 장소에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리의 역할은 부수적이고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에 거치하거나 실내 천장에 거치하여 사용되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나 설계 및 제작 의도를 보아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이 제8414.5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으로 보아 제8414.5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주된 용도가 테이블 위나 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주로 테이블 위 또는 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테이블이나 천장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부착된 고리 등을 통하여 테이블이나 천장용뿐만 아니라 유모차·야외용 텐트·낚시용 등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그 주된 용도를 테이블용 및 천장용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안고 다니는 반려 선풍기’, ‘무궁무진한 활용도’, ‘가족 끈을 이용해 벽걸이로도 사용’ 등으로 홍보하면서 그 사용처도 화장대·화장실·식탁·침실·사무실·유모차·캠핑·낚시·차박 등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불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실내·외에서 동시에 사용되거나,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팬들을 일관되게 제8414.5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관139, 202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8414.51호 품목분류 사례들은 모두 테이블 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이거나 건물·차량 등의 천장, 벽면에 장착되어 해당 위치에서만 사용되는 등 주된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고리 등을 사용하여 텐트·벽·기둥 등 다양한 장소에 거치하거나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이러한 품목분류 사례와는 다른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압축천연가스(CNG) 운송 컨테이너의 품목분류

김 진 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개요

협동일관용기[인터모달 컨테이너(intermodal container)]는 화물운송에 주로 사용하는, 쇠로 만든 큰 상자로, 협동일관 운송에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해 제조되는 표준화된 선적용기다. 통상 ‘컨테이너(container)’라고 부른다.

협동일관이란 서로 다른 운송수단, 즉 선박·철도·트럭을 막론하고 옮겨 실을 때마다 내용물을 꺼냈다가 다시 포장할 필요 없이 이 컨테이너째로 싣고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협동일관 운송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심을 이 컨테이너가 지키고 있다. 물론 그보다 작은 규모에서의 운송에도 널리 쓰인다.

컨테이너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마다 표준화돼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컨테이너의 90%는 내후성강으로 만들어 길이 20피트(6미터) 또는 그 두 배인 40피트(12미터)인 컨테이너가 차지하고 있다. 이 컨테이너를 소위 건화물(dry freight) 컨테이너, 또는 범용(general purpose) 컨테이너라고 부른다.¹⁾

●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²⁾ & 20피트 탱크 컨테이너와 천막으로 덮인 지붕 없는 컨테이너³⁾ ●



다른 형태의 컨테이너 예로, 가스 수송을 위한 철강제 탱크(실린더) 다발로 구성된 컨테이너도 있다. 몇 년 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압축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관 다발 컨테이너(Tube bundle container)의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1)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전: ‘컨테이너’ 정의 중 발체

2)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전: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직육면체 구조이며 적재 후 고정 시 쉽도록, 또는 운송을 위해 8개 모서리 형태(코너 캐스팅)가 적용돼 있다.

3) 위키피디아(wikipedia) 사전 중 발체

참고로, WCO HS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은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인 ‘HS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하는데, 이 의견서는 국내 품목분류 결정 시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독자들은 수출입 신고 시 유사한 물품이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등재돼 있으면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 다발 컨테이너의 품목분류에 대한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쟁점 사례

1. 관 다발 컨테이너(Tube bundle container)

물품 설명	압축천연가스(CNG) 수송에 사용되는 다수의 실린더로 구성돼 있다. 각 실린더에는 가스 방출 및 주입을 위한 개별 밸브와 게이지가 장착돼 있다. 실린더는 용접돼 있거나 영구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으며, 통상 6m 또는 12m(20 또는 40피트)인 컨테이너와 동일한 직경의 외부 금속 프레임 안에 둘러싸여 있다. 본 제품은 프레임 위에 구멍이 있어서,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다.
--------------	---

물품
이미지



2. 쟁점 세번

- 1) 제7311호: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2) 제8609호: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3. 의견

1) 제7311호

제7311호에는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 철강으로 만든 용기’가 분류되고,

제731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산소·아르곤·수소·아세틸렌·이산화탄소·부탄)의 운송이나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용적의 크기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므로 가스 운송용 쟁점물품은 해설서 내용에 부합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용기에는 밸브(valve)·탭(tap)·압력계·액면계 등의 조정용·제어용이나 측정용의 장치가 붙은 것도 있다”고 설명하므로 밸브와 게이지가 부착된 쟁점물품은 해당 해설서 내용과 유사함.

또한 제7310호 해설서 중 “(g)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장치를 갖춘 용기(제8609호)”의 제외규정과 같이 제7310호에서 제8609호를 제외하도록 설명하며, 반면 제7311호에서는 제8609호를 제외하는 해설서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제731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1호에 분류함.

2) 제8609호

제15부 주 제1호에서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선박·항공기)”를 제외하므로 제8609호를 우선 검토함.

제8609호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609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라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은 제8609호의 주 규정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함.

또한 쟁점물품의 프레임에는 구멍이 있어서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므로 제8609호 해설서 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쟁점물품은 복합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609호에 분류함.

3) 논의 결과

WCO 논의 시 일부 국가에서는 철강제 용기에 해당하므로 제7311호에 분류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쟁점물품의 구조 설명(프레임 위에 구멍이 있어서,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다)이 있으므로 제8609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주장으로서 통칙 제1호 대신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제8609호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 결과, 대다수 국가는 쟁점물품의 주된 용도가 복합운송을 위해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임상의 구멍 때문에 제8609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쟁점물품을 제8609호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수용됐다.

8609.00 1. 관 다발(Tube bundle) 컨테이너

압축천연가스(CNG) 수송에 사용되는 다수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실린더에는 가스 방출 및 주입을 위한 개별 밸브와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다. 실린더는 용접되어 있거나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6m 또는 12m(20 또는 40피트)인 컨테이너와 동일한 직경의 외부 금속 프레임 안에 둘러싸여 있다. 본 제품은 프레임 위에 구멍이 있어서,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적용

III. 사례 해설

지금까지 관 다발 컨테이너에 관한 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이번 WCO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 검토사항과 국내 유사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WCO 품목분류 결정에서 쟁점물품은 구조 설명인 “프레임 위에 구멍이 있어서, 로드트레일러 혹은 다른 운송수단에 부착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핵심적인 분류 기준으로 봤으며,

제8609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 제8609호 해설서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hook)·링·카스터(caster)·받침대 등을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란색으로 처리한 부분을 영문으로 살펴 보면, “They are equipped with fittings (hooks, rings, castors, supports, etc.) to facilitate handling and **securing on** the transporting vehicle, aircraft or vessel”인데, 특히 ‘securing on’은 국문으로 “안전을 위하여”로 번역돼 있다.

‘securing’은 ‘Cambridge 영어사전’에서는 “(형) 안전한, 확실한, (동) 단단히 고정시키다”로 설명하고 있고, ‘oxford 영어사전’에서는 “확득하다. 고정시키다. 보호하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설서 국문에는 “안전을 위하여”로 번역돼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차량, 항공기, 선박에 고정시키다”로 번역하는 것이 해설서 문맥상 맞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장의 번역은 “이러한 것은 운송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취급과 고정(장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o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WCO에서 각 국가는 복합운송 수단(차량 등)에 쟁점 컨테이너를 고정(장착)하기 위한 프레임상 구멍이 있으므로 제8609호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8609호 해설서에서는 운송수단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물품은 제8609호에 분류하지 않고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 제8609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케이스·나무상자 등: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 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즉, 쟁점물품의 경합세번인 제7311호와 제8609호의 구분은 차량 등 운송수단에 결합되도록 하는 “장착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없다면 제7311호에 분류하고, 있다면 제8609호에 분류한다.

물론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8609호를 제외하므로 제8609호가 우선 검토되지만, 쟁점물품은 제8609호의 요건에 맞지 않아 제7311호로 분류됐다.

두 번째로, 유사물품의 국내 분류사례를 살펴보겠다.

□ 유사물품의 국내 분류 사례 1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00064(품목분류위원회)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 세번	제7309.00-0000호
경합 세번	제7309.00-0000호, 제8609.00-1000호
품명	Portable Tank(① 1635-Liter 일본산, ② C-430 네덜란드산)
물품 설명	○ 모델별 규격 - ① 1635-Liter: 208.3×106.7×128.1cm, 1,635ℓ(2.9m³) - ② C-430: 208×107×122cm, 1,465ℓ(2.71m³) < 주요 부착구 > - 안전밸브 및 액체화물 주입구(Recessed Dome) - Lifting lugs(고리): 탱크 하역 및 차량운반 시 체인으로 탱크를 차량에 묶는 데 사용됨. 물품 설명 - 받침대: 홈이 있어 Forklift로 탱크를 하역하거나, 차량운반 시 체인으로 탱크를 차량에 묶는 데 사용됨. ※ 받침대에는 탱크를 차량 등에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장착구는 없음. ○ 용도 - 무기화합물 등 액체화물을 국제 복합 운송하는 데 사용 - 해상운송 시에는 직접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일반 건화물용 컨테이너안에 5개씩 적입해 운반 - 육상운송 시에는 Lifting lugs, 받침대의 홈을 이용해 체인으로 탱크를 차량에 묶어 운반 관세율표 제7309호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Reservoirs, tanks, vats and simi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f iron or steel)’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설서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 방법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제8609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정 사유	먼저 본 건 물품이 제8609호의 컨테이너에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액체화물을 국제 복합 운송하는데 반복 사용되는 철제 원통형 용기에는 해당하나, 해상운송 시에는 직접 선박에 부착되지 않고 일반 건화물용 컨테이너에 5개씩 적입·운반되고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609호에서 규정하는 컨테이너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609호의 규정에서 액체운반용 컨테이너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건 물품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갖춰야 하는 Corner fitting(차량이나 선박 등에 직접 부착되도록 하는 ‘모서리 끼움쇠’) 등을 갖추지 않고 Lifting lugs나 받침대의 홈을 이용해 체인으로 차량 등에 결박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609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운송수단에 의해 운반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액체운반용 컨테이너로 볼 수 없어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돼야 할 것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철강제의 액체용 탱크이므로 관세율표 제7309호의 용어에 의거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1번 물품은 액체 화물용 컨테이너로 제7309호(철강제 탱크)에 분류됐다. 결정 사유를 보면, 체인으로 차량 등에 결박하는 구성요소가 있다고 해서 운송수단에 장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8609호 대신 제7309호에 분류됐다.

□ 유사물품의 국내 분류 사례 2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03(품목분류위원회)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8609.00-3000호
경합 세번	제7309.00-0000호, 제8609.00-3000호
품명	GP-IBC(Goodpack-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B7 ; CHINA
물품 설명	○ 개요 - 장착구(받침대(포크 슬롯), 스트래핑 루프(링), 스택킹 핀·홀 등)가 부착된 직육면체 구조의 아연도금된 철강제 운송용기(내용연수: 15년) - (용도) 천연·합성고무 등 일반화물 운반용 ※ [규격] 1,500×1,150×1,098mm / [무게] 135±4kg / [내부용적, 실제 탑재 무게] 1,500리터 ○ 주요 장착구별 기능 - Stacking pin·hole: 컨테이너 상·하단부의 각 모서리(4개) 부분의 pin·hole로 IBC를 쌓아 올렸을 때 IBC끼리 서로 결속·고정하는 장치 - Flip lock: 컨테이너 상단부 각 모서리(4개)에 부착돼 모서리를 마주한 벽면을 고정·분해하는 잠금장치 - Strapping loop: 컨테이너 벽면 상단에 2개의 링이 부착돼 끈을 사용해 상단부의 덮개와 화물을 고정하는 장치 - Fork slot(받침대): 지게차에 의해 운송될 때 지게차의 fork에 고정하거나, 화물적재용 벨트를 이용해 운송수단에 고정하는 데 활용 - Latch(걸쇠): Flip lock과 같이 모서리를 마주한 벽면을 고정시키는 잠금장치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s)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캐스터(caste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일반화물 등의 도로·해상 수송에 사용되는 직육면체 구조의 철강제 운송용기로서 반복 사용(내용연수 15년)이 가능하고, 차량·선박에 의한 수송 시 취급상 용이와 안전을 위해 받침대(포크 슬롯, fork slot), 스택킹 핀·홀(stacking pins·hole), 스트래핑 루프(strapping loop) 등의 장착구가 부착돼 있는 바, 제8609호의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을 컨테이너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 8609.00-3000호에 분류함.

물품
이미지



2번 물품은 장착구들이 부착돼 있고, 운송수단에 벨트로 묶을 수 있는 받침대가 있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제8609호에 분류됐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번 물품과 2번 물품의 분류 사유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1번 물품은 체인으로 운송수단에 고정하는 것은 장착구가 아니라고 했으나, 2번 물품은 벨트로 운송수단에 고정하는 것을 장착구로 본 것이므로 모호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2번 물품의 결정사유를 보면, 해설서상 ‘securing on’의 국문 번역상 모호한 내용 때문에 수송 시 취급상 용이와 안전을 위한 것이면 받침대(포크 슬롯, fork slot), 스택킹 핀·홀(stacking pins·hole), 스트래핑 루프(strapping loop) 등 제8609호에 부합하는 장착구로 봐 제8609호로 분류한 것이고,

1번 물품은 해설서상 ‘securing on’을 ‘고정하는’으로 이해해 lifting lugs, 받침대 등 장착구가 있어도 제8609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7309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HS품목분류의견서의 대상물품인 ‘관 다발 컨테이너’에서도 운송수단에 직접 결합하는 것을 제8609호에 분류했으므로 ‘securing on’을 원문 그대로 ‘고정하는’으로 번역,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V. 시사점

이번 호에서 관 다발 컨테이너의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철강제 용기(제8609호) 해당 여부와 제8609호 구분 기준(운송수단에 부착하는 장착구 유무)을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securing on’의 번역은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재질 세번과 제8609호를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 기준이므로 추후에 해설서 번역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컨테이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기능, 용도,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 적절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38류vs.제39류’ 수소염화불화탄소 혼합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는 기본적인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수소 부분을 플루오린이나 다른 할로젠 원소로 치환한 물질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냉매제나 발포제, 분무제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Cl₃F)가 있다.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의 상표명인 ‘프레온 가스’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두문자어인 CFCs(염화플루오린화탄소)로도 많이 불린다.

무색무취에 독성이 없고 불에 타지 않아서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부터 스프레이, 소화기분무제 등에 사용된다. CFC는 안정성이 높은 분자로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 때문에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FC 분자는 분자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안정적이기에 대기 중에 방출되면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채 성층권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성층권에 올라간 CFC는 자외선 에너지에 의해 구조가 파괴돼 염소 원자가 떨어지는데, 이 염소원자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과 반응해 오존 분자를 파괴한다.

현재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CFCs 등 100여 종의 물질을 규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제3824.7호에 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젠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을 별도의 호로 분류하기 위해 제3827호를 신설함으로써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연소를 억제하거나 완화해주는 난연제인 트리스(1-클로로-2프로필)포스페이트[Tris(1-chloro-2-propyl)phosphate]와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이 혼합된 무색 투명액상으로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그 밖의 폴리에스테스 등’에 해당하는 제3907.29-9000호에 신고했다.

제39류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며,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주 제3호의 범주에 한해 적용된다.

■ 제39류 주 제3호

-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제39류는 기본적으로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징인 분자인데, 본 물품에 포함된 성분 중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는 없다. 따라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젠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4호에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Tris(1-chloro-2-propyl)phosphate와 1,1-Dichloro-1-fluoroethane으로 구성된 혼합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 규정하는 중합체 성분이 없으므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827.32-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BLENDED POLYOL	3907.29-9000 (FCN1 0%)	Mixtures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827.32-0000 (FCN1 0%, 요건 확인 필요)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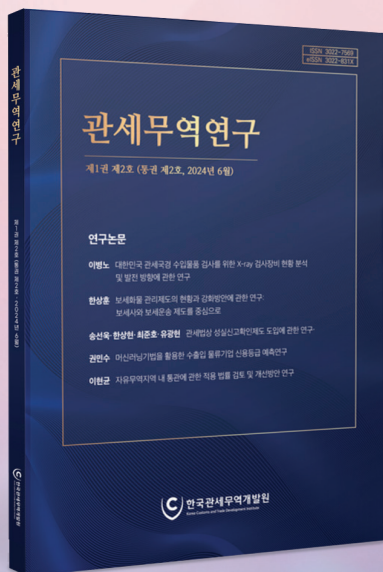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